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71
----------	-------

발의연월일 : 2026. 8. 6.

발 의 자 : 이재관 · 윤준병 · 송재봉
문진석 · 박용갑 · 정준호
강준현 · 이상식 · 황명선
이정문 · 송옥주 · 김영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을 뿐,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및 은퇴 이후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등) ①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은 봉사동물을 적절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이 적절한 보호·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3(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소유한 봉사동물로서 은퇴한 봉사동물의 보호·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보호·관리
2.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분양 및 사후관리
3.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진료 및 치료
4. 그 밖에 은퇴 국가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2(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등) ①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은 봉사동물을 적절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u> <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이 적절한 보호·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16조의3(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소유한 봉사동물로서 은퇴한 봉사동물의 보호·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보호·관리</u> <u>2.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분양 및 사후관리</u> <u>3.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진료</u>

및 치료

4. 그 밖에 은퇴 국가 봉사동물
의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
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제2항
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
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
항에 따라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
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